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16 발의연월일: 2024. 7. 29.

발 의 자: 김주영・박상혁・박지혜

박해철 • 박희승 • 복기왕

오세희 • 윤건영 • 윤후덕

이기헌 · 정진욱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상 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및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관할 학교의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런데 적정한 학급 규모에 관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지역 별로 학급당 학생 수를 달리 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별 편차 가 크고 일부 지역에서는 과밀학급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학급 규모가 학생의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 역별 교육통계를 기반으로 적정한 학급 규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에게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

를 바탕으로 매년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수립·고시하 도록 하고, 교육감에게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 는 한편 실태조사 및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4조의2(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바탕으로 매년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학교별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교육감은 관할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한다.
 - ⑤ 그 밖에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신 설>	제24조의2(학급당 적정 학생 수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11조의 2제2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바탕으로 매년 학급당 적정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교육환경등을 고려하여 학교별학생수 및 학급당학생수를 결정하여야한다.이경우학급당학생수를 결정하여야한다.이경우학급당학생수는 20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교육감은 관할학교의 학급당학생수에 대한실대조사를 매년실시하여야한다.
	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감은 관할 학교의 학급 당 학생 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대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교육 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급당 적 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한 시책 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